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30일, 이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4. 11. 20.)

상정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1. 22.)

상정, 축조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5. 8. 20.)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의원)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책임을 환자측이 지게 되는 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및 의료사고 형사 특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